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춘곤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88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10월 17일
발 의 자: 김춘곤 의원(1명)
찬 성 자: 경기문, 곽향기, 김경훈,
김규남, 김길영, 김용일,
김형재, 박철성, 송경택,
유만희, 이영실, 이종태,
이종환, 임만균, 장태용,
최민규 의원(16명)

1. 제안이유

- 지진 옥외대피소는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 그 개방 여부에 따라 대피 시간 또는 편의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, 상시 개방되어 있는 공원과 달리 학교운동장 등은 상시 개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출입문 개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시설물 등 관리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촉구함으로써 지진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
- 또한, 재난분야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일부 조문내용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현행 시민에 부여되었던 대피소 운영 협력 의무를 삭제함(안 제43조 제2항)
- 나. 지진 옥외대피장소로 지정된 시설물의 출입문 개방 관련 조항을 신설함(안 제43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시민의 책무)”를 “(시민 의무)”로 한다.

제43조제2항 중 “시민”을 “시장”으로, “하며,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”를 “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시민교육 등을 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4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 제10조의3에 따라 지진 옥외대피장소로 지정된 시설물의 관리자 및 시건장치담당자는 행정안전부의 관계 지침에 따라 출입문 개방이 필요한 경우 시민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개방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시민의 <u>책무</u>)</p> <p>제43조(대피소의 관리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시민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 피해 상황을 상정하고 대피소, 대피경로 등을 확인하며,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5조(시민 <u>의무</u>)</p> <p>제43조(대피소의 관리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시장</u>----- ----- -----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시민교육 등을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 제10조의3에 따라 지진 옥외대피장소로 지정된 시설물의 관리자 및 시건장치담당자는 행정안전부의 관계 지침에 따라 출입문 개방이 필요한 경우 시민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개방하여야 한다.</p>